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육위원회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700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총괄적 검토 .....                         | 4  |
| 2. 조문의 구성체계 .....                       | 10 |
| 3. 주요 조문별 검토 .....                      | 11 |
| 가. 정의(안 제2조) .....                      | 11 |
| 나. 기본이념(안 제3조)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  | 14 |
| 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7조) .....     | 17 |
| 라.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       | 22 |
| 마. 인력의 양성 등(안 제9조) .....                | 24 |
| 바. 교원 등 임용의 특례(안 제10조) .....            | 27 |
| 사. 인공지능교육 윤리규범의 제정·공포(안 제11조) .....     | 29 |
| 아.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안 제12조) .....            | 33 |
| 자. 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안 제13조) ..... | 36 |
| 차.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            | 37 |
| 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6조) .....         | 39 |
| 타. 부칙 .....                             | 41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9. 4.

3. 회 부 일 : 2025. 9. 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

정임.

이에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강사,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육기관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등으로 그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인공지능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 인공지능(AI)은 최근 국가와 사회,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음. 의료, 복지, 교통, 환경, 행정, 국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성·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혁신을 가능케 하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과 생활의 근본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7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RAISE Summit’에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공지능 리더들이 향후 3~6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 활동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는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San Francisco Consensus)’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단계에 진입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할 전망이다 것으로 보임<sup>1)</sup>.
- 현재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AI 주도권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공지능

---

1)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4p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는바,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2025. 6. 6.)하였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되었고,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음.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으로,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됨.

## 나. 제정 필요성

-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이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임<sup>2)</sup>.

---

2)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 등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통령령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 중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의무(투명성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들의 주 목적은 교육의 진흥과 체계적 추진이 아닌 기술의 발전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보이고<sup>3)</sup>,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 등 인공지능에 대한 체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경쟁력 공고화’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4)</sup>.

- 인공지능 기반 강화는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의 정립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침해, 차별, 통제 불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험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sup>5)</sup>과 같은 제도로

4)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0p

5)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카. <생략>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규제할 수 있지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부담이 크고 완벽한 통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올바른 가치체계의 정립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음<sup>6)</sup>.

□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으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는바,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과제 목표로 하였음.

□ 교육부장관은 11월 10일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sup>7)</sup>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향에도 부합함.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견 없다는 의견이나, 과학기술

---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4p

7)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별첨)

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연계성·정합성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교육산업에 대한 법체계면에서의 정합성 요구, ② 업무의 위탁 관련 규정과 전문기관 지정과의 정합성 ③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대상 등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으로,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등, 인력의 양성, 인공지능교육 윤리, 인공지능영향평가, 인공지능교육산업과의 협력,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조문의 구성체계 ]

| 본칙                   |                                |
|----------------------|--------------------------------|
| 제1조 목적               | 제10조 교원 등 임용의 특례               |
| 제2조 정의               | 제11조 인공지능교육 윤리                 |
| 제3조 기본이념             | 제12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13조 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br>지원과 협력 |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 재정지원 등                    |
| 제6조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제7조 실태조사             |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 부칙                             |
| 제9조 인력의 양성 등         |                                |
| 시행일                  |                                |

### 3. 주요 조문별 검토

#### 가. 정의(안 제2조)

#####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인공지능”,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교육산업”, “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br>2. “인공지능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br>가. 인공지능의 원리·영향·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br>나. 인공지능의 활용·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br>다. 인공지능의 역기능·부작용에 관한 교육<br>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등의 활동<br>3. “인공지능교육산업”이란 인공지능교육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br>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br>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br>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br>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 2) 검토의견

### 가) 인공지능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어<sup>8)</sup>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제정  
안은 「인공지능기본법」과 동일하게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음.

### 나) 인공지능교육

- 제정안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을 ①인공지능의 원리·영향·윤리 등  
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②인공지능의 활용·개발 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 ③인공지능의 역기능·부작용에 관한 교육, ④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  
중,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  
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  
안의 정의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인공지능교육산업

-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산업”을 인공지능교육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

8)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21일 공포됨.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 “인공지능교육산업”에 대한 정의는 인공지능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sup>9)</sup>.

#### 라) 교육기관

- 제정안은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모든 학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동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9)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나. 기본이념(안 제3조)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3조(기본이념) ① 인공지능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r>② 인공지능교육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br>③ 인공지능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기관 및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이념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20.12.)를 마련하여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의 3대 원칙·10대 요건<sup>10)</sup>을 제시하고 있음.

□ 3대 원칙으로는 ①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 있고, 10대 요건으로는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이 있음.

□ 제정안은 기본이념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개인의 권리 보장, 사회 발전에 기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 인공지능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동일한 맥락으로 기본이념과 국가 등의 책무가 규정된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sup>11)</sup>을 규율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

10) “인공지능 윤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

1. 3대 기본원칙(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원칙)

①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2. 10대 핵심요건(기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요건)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본법」상 지능정보화 기본원칙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7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6조는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p>제6조(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기관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의 기본 방향</li> <li>2. 인공지능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li> <li>3. 인공지능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li> <li>4. 인공지능교육의 내용, 교수인력 및 인공지능교육산업 등 윤리적 책임 확보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분야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li> <li>6.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개발</li> <li>7. 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과의 협력 방안</li> <li>8. 그 밖에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li> </ol> |

## 제 정 안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3년 주기로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종합계획에 인공지능교육 기본방향, 법·제도 개선, 인력 양성 방안, 교육의 내용, 교수인력 및 관련 산업의 윤리적 책임 확보, 안전성 확보, 연구·개발, 국가·지자체·민간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교육정책의 기본계획·종합계획이나 재정지원 계획이 대부분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나<sup>12)</sup>, 동 제정안에서는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발달 속도를 고려한다면 3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sup>13)</sup> 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인공지능교육의

- 12)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회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방향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인공지능교육산업 등 윤리적 책임 확보에 관한 사항 및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협력 방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지능과 산업교육에 대해서 각각 규율하면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14)</sup>, 제정안에서는 상기 언급한 기본계획들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sup>15)</sup>]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5)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임.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sup>16)</sup>]

1.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에 해당하므로<sup>17)</sup>, 인공지능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임.

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라.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8조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및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제2항),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제3항),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제4항).

| 제 정 안                                                                                                                                                                                                                                                                                                                                                                                                                    |
|--------------------------------------------------------------------------------------------------------------------------------------------------------------------------------------------------------------------------------------------------------------------------------------------------------------------------------------------------------------------------------------------------------------------------|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 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br>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br>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r>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면서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이와 별도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을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 인력의 양성 등(안 제9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9조는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 및 강사, 인공지능을 활용·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1항), 다른 교육기관, 연수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과 인공지능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협력 대상인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항).

| 제 정 안                                                                                                                                                                                                                                                                                                                                                                                       |
|---------------------------------------------------------------------------------------------------------------------------------------------------------------------------------------------------------------------------------------------------------------------------------------------------------------------------------------------------------------------------------------------|
| 제9조(인력의 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br>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 및 강사<br>2. 인공지능을 활용·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br>3.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br>4. 그 밖에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br>② 제2조제4호다목의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다른 교육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 및 기업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 및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인공지능 전문인력은 전 산업 분야에서 그 수요가 높은 반면,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sup>18)</sup>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전문인력 등을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전문 교원·강사 인력이 부족한 인공지능교육 분야에서 다른 교육기관, 연수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교수 인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sup>19)</sup>, 시책 수립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제정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의 근거조항을 제정안 제14조로 표기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18) 중소 제조업체도 "스마트공장에 AI 도입 원해"...돈·인력 부족이 과제, 한국일보, 2025.10.20.  
한국, AI 3강 꿈꾸지만...현실은 '글로벌 톱10', 연합뉴스, 2025.11.10.

19)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13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바. 교원 등 임용의 특례(안 제10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0조는 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안 제2조제4호다목의 교육기관의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0조(교원 등 임용의 특례) 제10조제1항 <sup>20)</sup> 에 따른 인력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겸임교원 또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 교원·강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 전문인력이 대학에서 겸임교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 법령 상 교원 임용 자격기준<sup>21)</sup>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20) 제정안은 제10조제1항으로 표기하였으나, 제9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함.

21)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이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는 첨단산업<sup>22)</sup>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 특례를 마련하였는데, 겸임교원의 경우 제정안과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제정안에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례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위: 년)

| 연구·교육<br>경력연수<br>직명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
|                     | 연구실적<br>연수                         | 교육경력<br>연수 | 계  | 연구실적<br>연수    | 교육경력<br>연수 | 계  |
| 교수                  | 4                                  | 6          | 10 | 5             | 8          | 13 |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 강사                  | 1                                  | 1          | 2  | 1             | 2          | 3  |
|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2) 동법에서 첨단산업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첨단산업(법 제2조제1호다목 관련)

- ①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 사. 인공지능교육 윤리규범의 제정·공포(안 제11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1조는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제3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제정하고, 교육기관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기관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윤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1조(인공지능교육 윤리)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하 이 조에서 “윤리규범”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br>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교육분야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③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검토의견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 이슈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 12)」

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바 있고,

교육부도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sup>23)</sup>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2. 8.)」<sup>24)</sup>을 제정하였음.

“인공지능 윤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

1. 3대 기본원칙(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원칙)

①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2. 10대 핵심요건(기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요건)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

□ 또한,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생활과 자율성의 가치와 안전과 안보의 가치가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UNESCO 인공지능 윤리권고('21. 11.)」<sup>25)</sup>가 제정되어 인

23) 동 원칙에서는 권리 및 책임 주체로 교육당사자

24) 동 원칙은 서문, 대원칙(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10개의 세부원칙으로 이루어짐.

(적용대상)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교육분야 인공지능 10대 세부원칙)

1.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2.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4.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5.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6.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7.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8.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9.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10.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25) “AI 윤리에 대한 권고”, UNESCO, 2021.11.

1. 4대 가치

①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 존엄성의 존중·보호·증진, ②환경 및 생태계의 번영, ③다양성 및 포용성 보장, ④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상호연결된 사회 구축

2. 10대 원칙

공지능 윤리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윤리 기준들이 담고 있는 가치와 원칙을 참고하여 윤리규범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안 제11조제2항은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교육분야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명시적인 윤리규범 수범자를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sup>26)</sup>,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2. 8.)」에서는 권리 및 책임 주체에 개발자와 관리자 외 교육당사자(이용

---

①비례의 원칙 및 무해성, ②안전 및 보안, ③공정성 및 비차별성, ④지속가능성, ⑤프라이버시권 및 데이터 보호의 권리, ⑥인간의 감독 및 결정, ⑦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⑧책임 및 의무, ⑨의식 및 리터러시, ⑩다자적이고 조정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

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자)<sup>27)</sup>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윤리규범 수범자에서 학생과 교사 등 교육당사자(이용자)를 제외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올바른 가치체계의 정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서는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sup>28)</sup>.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윤리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윤리원칙 등에 따른 실천 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sup>29)</sup>

27) 교육기관 등에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수자, 학습자 및 학부모

28)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29)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임.

## 아.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안 제12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2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br>② 그 밖에 영향평가의 범위·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중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sup>30)</sup>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

30)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것도 포함되며<sup>31)</sup>, 제정안은 이와 같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여, 잠재적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에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기관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32)</sup>.

□ 이와 같이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노력의무와 국가기관등의 물품 등 이용시 우선적 고려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유사·중복된 영향평가가 실

31)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32)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되지 않도록 제정안에 영향평가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 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안 제13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3조는 인공지능교육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3조(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br>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 인공지능교육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등의 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제정안은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차.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5조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 검토의견

□ 안 제2조제4호마목에서는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정부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입 법 례]

「인공지능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한편, 제정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은 원 권한자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바<sup>33)</sup>,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3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26p

## 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6조)

###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6조는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 관련 죄를 적용시키려는 것임.

| 제 정 안                                                                                                                                                                                   |
|-----------------------------------------------------------------------------------------------------------------------------------------------------------------------------------------|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br>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에서는 법령상의 교육부장관에 업무를 위탁받거나, 법령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공지능은 첨단산업으로 비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며, 동 제정안은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 또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위탁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정조문대비표]

| 제정안                                                                                                                                                                                                                      | 수정안                                                                                                                                                                                                                          |
|--------------------------------------------------------------------------------------------------------------------------------------------------------------------------------------------------------------------------|------------------------------------------------------------------------------------------------------------------------------------------------------------------------------------------------------------------------------|
| <p>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u>제8조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p> <p>2. <u>제15조제2항에</u>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p> | <p>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u>제8조제1항에</u>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p> <p>2. <u>제8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u>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p> |

## 타. 부칙

### 1) 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검토의견

- ☐ 동 제정안은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인공지능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재교육과정, 인공지능영향평가 방법·절차, 권한의 위임·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바,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교육부는 신규 법안 제정에 따라 하위 법령 제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공지능교육의 내용, 적용시기, 윤리규범 세부사항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